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0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1월 28일

발 의 자: 박 · 석 의원(1명)

찬 성 자: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민병주, 윤기섭,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최유희 의원(10명)

1. 주문

- 주택 밀집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이 절실하나 현행 세법상 세금 추징 문제로 인해 종교계의 참여가 위축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신규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의 대안으로 학교·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종교행위) 외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종교단체의 선의가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순이 발생함.
- 이러한 규제는 주차장 개방을 장려하는 서울시의 정책과 충돌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저해하므로, 종교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신규 취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는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함께 종교시설 등 민간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위치한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한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공간이며, 이에 많은 종교단체가 지역사회 기여와 나눔의 일환으로 주차장 개방에 동참 중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종교계의 공익적 참여 의지를 꺾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정책과 충돌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종교행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 조항으로 인해 종교단체가 주차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주차장 부지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고유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장려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종교

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활성화 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종교단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 사용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0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